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불문의 원칙이지만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 개별법에 그 인정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에 대한 기속력이 발생할 뿐 국민에 대해 특정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공적 견해표명은 원칙적 책임있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그 권한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행정청간의 회신으로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2.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의할 때,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이미 납부한 개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 ③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 ④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②

【해설】

-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는 상대방은 이를 쟁송으로 다툴 수 없으나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무효가 아닌 조세부과처분은 취소사유이므로 취소권 없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민사법원은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부당이득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고유한 특질로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인정된다.
- ④ 국가배상의 위법성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이라도 판

단가능하다.

3. 다음 중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 ② 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 ③ 국립대학과 재학생과의 관계
- ④ 국가와 납세자의 관계

정답 ④

【해설】

국가와 납세자의 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해당한다.

4. 다음 사례를 읽고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자 갑은 운전도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거 갑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였다.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별표28]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은 법규 명령이다.
-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5점은 확일적으로 받게 되는 확정점수이다.
- ③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벌점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은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위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국민을 구속하지 않나만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

정답②

【해설】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

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판 1998. 3. 27, 97누20236).

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 ④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 ①② 행정입법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긍정하고 있다.
- ③ 법령이 위헌무효로 결정되기 전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임이 원칙이다.
- ④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② 무효인 행정행위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 ③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정답 ④

【해설】

판례는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 다음 부관의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 - 해제조건
- ② 2012년 2월 25일까지의 도로사용허가 - 기간
- ③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부가 - 부담
- ④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철회권유보

정답 ③

【해설】

- ①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인가 - 정지조건
- ② 2012년 2월 25일까지의 도로사용허가 - 기한 중 중기
- ③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부가 - 부담
- ④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해제조건

8. 다음 보기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 ㉡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 ㉢ 안경사시험합격처분과 안경사면허처분
-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
- ㉤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하자승계 인정판례㉠㉡㉢㉤

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인을 위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 ②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하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 ③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 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예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

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①

【해설】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 등은 객관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1993.5.27, 92누19033).
②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은 특허이다. ③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거나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확인이라 한다. ④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8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9.2.26., 2006두16243).

10.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②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④ 행정질서벌 부과에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6. 4. 12, 96도158).

③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재 1994.06.30, 92헌바38).

④ 조례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③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2.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 ②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서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교과서 검정이 고도의 학술상·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또 검정상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4.24, 91누6634).

1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유제시의 하자는 무효사유아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에 따라 무효인 하자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를 통상 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 ③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더라도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동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성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14.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직접강제,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 ②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다.
-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 ② 과징금은 행정질서벌이 아니다. 과징금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것이다.
-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부 내부의 징계벌이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15.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사례이다. 보기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 구청장은 2000.5.1.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甲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甲소유의 '털식토리리' 기판 7대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수거하였다. 당시 단속공무원 乙 등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갑에게 제시하고 수거증을 교부하였으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았다.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저항하자 단속공무원 을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③ 단속하기 전 갑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단속공무원 을 등이 영장 없이 단속한 행위는 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④

【해설】

- [1]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라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 [2]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해에 대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전적 절차와 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

16.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사정은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대판 2005.1.27,2003다49566
- ② 재정사정은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67.2.21,66다1723).
- ③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해야 한다(대판 2000.5.26, 99다53247).
- ④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001.7.27,2000다56822).

17.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 ③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대판 1998.2.10, 97다45914).
- ③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하고 있다.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 ①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④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정답 ②

【해설】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침해 또는 침해우려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①

【해설】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6.3.16, 2006두330).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전합 2006.3.16, 2006두330).

20. 다음 보기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의무이행심판	㉡ 예방적부작위소송	㉢ 의무이행소송
㉣ 당사자소송	㉤ 재결취소소송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④

【해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되고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이므로 재결취소소송은 허용된다.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법상 허용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다.